춘추항공 주식유한회사승객 수하물 운송 총조건

제1 조 총칙

1.1 개요

춘추항공 주식유한회사(이하 "춘추항공"이라 함)은 국내,국제 및 지역 항공운송을 수행할 때 정상적인 승객과 수하물 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운송 관리를 강화하며 승객과 춘추항공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 수송 총 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함)을 제정합니다.

1.2 적용범위

1.2.1 기본 원칙

1.2.1.1 본 조건 제1.2.1.3, 1.2.2, 1.2.3항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건은 춘추항공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승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징수하는 공공 항공운송에 적용됩니다. 본 조건은 춘추항공과 승객 간의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본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1.2 본 조건에 규정된 사항 중 변경이 빈번한 내용에 대해 춘추항공은 별도로「특수 승객 운송 설명」,「승객 운송 조건」 등 문서를 제정하며, 이는 모두 본 조건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문서와 본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정된 문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1.2.1.3 무료 및 특별 운임 운송은 해당 특별 운임 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건의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1.2.2 전세기 운송

춘추항공 전세기 계약 에 따라 취급한 운송일 경우 본 조건은 해당 전세기 계약 또는 전세기 항공권 조건에서 본 조건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2.3 코드 공유 운송

춘추항공과 기타 운송업자 사이의 코드 공유 계획에 따라 본 조건이 춘추항공이 실제로 운영하는 코드공유 항공편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춘추항공과 공동운항(Code-share) 항공편의 실제 운항항공사 간에는 적용되는 운송조건 및 운송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탑승 규정, 운송 거절 및 제한 규정, 수하물 운송 규정, 초과예약 처리 규정, 항공편 지연·결항·회항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3 언어 버전

본 조건은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언어 버전으로 번역됩니다. 중국어 버전과 기타 언어 버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국어 버전을 우선합니다.

1.4 기타 규정

본 조건의 각 조항 제목은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조항 내용 해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특별 운송 조건

2.1 운송 제한

2.1.1 **성인과 동행하는 아동·영아, 성인 미동반 아동, 질병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승객, 임산부, 맹인, 청각 장애인, 범인이나 범죄용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송이 가능한 승객은 제한운송대상 승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승객은 춘추항공의 해당 운송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전에 춘추항공의 동의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운송 규칙은 춘추항공이 별도로 제정한 「특수 승객 운송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설명은 본 운송 조건의 구성 부분에 속하며, 그 내용과 본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특수 승객 운송 설명」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2.1.2 아동 및 유아의 운송 조건

（1）영아 및 만5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는 항공기를 탈 때 반드시 만 18세 그리고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이 동반해야 **합니다.**

（2）만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이 혼자 항공기를 타면 춘추항공에 성인 동반이 없는 아동 탑승 수속을 신청하여 취급해야 하고 춘추항공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항공권을 구매 **및 탑승이 가능합니다.**

（3）춘추항공은 출생한지 14일 미만의 유아와 출생한지 90일 미만인 조산 유아를 운송하지 않**습니**다.

（4） 위 날짜는 모두 승객의 탑승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1.3운송 제한 승객수:안전 때문에 춘추항공은 기종에 따라항공편의 승객수를 통제합니다. **현재, 각 항공편별로 제한 운송되는 승객 수는 총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2. 운송 거절

춘추항공은 안전상의 사유 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2.1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또는 비행 경유 지역 국가나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명령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2.2안전검사를 거부하는 승객 또는 수하물

2.2.3 증명서 및 항공권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승객(다음 경우 포함)

(1) 승객이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유효한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연계 항공편이 확약되지 않아 중간 경유지에서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효 항공권, 불법적으로 취득한 항공권, 위조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해당 운임, 세금, 수수료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등.

2.2.4 승객의 행동, 연령,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항공 여행이 부적합 할 경우

(1) 심신미약으로 탑승 수속할 때 자기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승객

(2) 취중 승객 즉 알콜, 마취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통제력을 잃고 타 승객에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클 때

(3)발병 과정 중의 정신병 환자 또는 간헐적 정신병 환자;

(4) 공항 의료 기관 또는 지상 서비스 직원의 판단에 의거,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운송에 부적합한 승객

(5) 불확실한 임신 주기 혹은 승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임산부

(6) 부상, 질병, 허약 또는 정신 상태로 인해 자기 관리가 어려우며, 여행 중 전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독립적으로 돌봄 및 관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승객

(7)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구성하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자

(8) 특이한 체취나 특이한 기벽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승객

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2.5 수하물이 운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다음 경우 포함)

(a)국가에서 운송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물품, 위험물, 항공기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b)승객이 위탁하는 수하물의 단일 개체 중량 또는 크기가 춘추항공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분리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c)수하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미 부패한 경우,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d) 승인되지 않은 경찰 장비, 무기 또는 통제된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e)승객이 해당 수하물 초과 중량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2.2.6 승무원 또는 춘추항공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발송하는, 춘추항공이 제정한 비상구 좌석 제한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승객

2.2.7 신체 장애로 인해 적합한 유일한 좌석이 비상구 좌석인 승객

2.2.8 수량 제한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나, 해당 항공편에서 운송하는 해당 유형 인원 수가 이미 제한 수량에 도달한 경우

2.2.9 춘추항공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춘추항공 직원의 안내와 권고를 따르지 않는 승객

2.2.10 춘추항공은 승객이 비상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속하게 비상구로 이동할 수 있어 항공 안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승객이 당사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당사가 제정한 지원 대피 절차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2.11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 또는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 동기 또는 행동을 하는 승객, 또는 과거 항공운송 과정에서 항공기나 기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당사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승객

2.2.12 승객이 본 조건 제2.1항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는 경우

2.2.13 법률, 법규 또는 본 운송 조건에서 규정하는 기타 경우

2.3 운송을 거절당한 승객 안배

운송을 거절당한 승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3.1 본 조건 제 2.2.4 항에 해당하는 승객의 경우, 이미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본 조건의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3.2 국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건 제 2.2 항의 기타 조항에 해당하는 승객의 경우, 이미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본 조건의 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3.3 승객이 이미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본 조건 제 2.2 항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되어 서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4 승객 책임 고지

승객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항공 여행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승객이 비행 중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를 보여, 운송인이 비행 안전 또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항로 변경, 비상 착륙, 긴급 의료 처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운송인은 법에 따라 해당 승객 또는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자신이 항공기 탑승에 부적합함을 알면서도 은닉, 허위 진술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탑승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운송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앞서 언급한 추가 비용, 항공편 지연 손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 송치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 항공권

3.1일반 규정

3.1.1 항공권은 춘추항공과 항공권에 성명이 규정된 승객사이에 체결한 운송 계약의 1 차적 증거입니다. 항공권은 디지털 데이터로 춘추항공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 및 저장됩니다.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할 때 춘추항공과 승객의 책임과 권리는 단일 항공운송계약에만 적용됩니다.

3.1.2 승객은 춘추항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면 좌석지정이 성립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춘추항공 시스템이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며 비로소 운송 계약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기타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시간은 항공권의 작성 및 결제 시간입니다.

3.1.3항공권은 성명 표기식이며 항공권에 표시된 성함의 승객만 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3.1.4 춘추항공의 별도 규정 외에는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5승객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항공권의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정 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6항공권 사용 요구

3.1.6.1 전자항공권을 사용한 승객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제공하는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탑승할 권리가 없습니다.

3.1.6.2 연결여정 항공권은 반드시 항공권에 규정된 운항 경로에 따라 출발지부터 순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3.1.6.3 승객은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 정보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며 탑승 수속, 탑승 및 기내에서의 행위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1.7 춘추항공은 「항공 이용 조건」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이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위의 규정 내용이 이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정된 규정이 이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3.2항공권 유효기간

3.2.1 항공권의 실제 출발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며 항공권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성 및 결제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항공권이 변경후 항공권 유효기간은 원래 항공권 작성 및 결제일 혹은 실제 출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3.2.2 항공권 유효기간은 여행을 시작한 날 또는 항공권을 매립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날 0시까지로 계산**합니**다.

3.3 전자 항공권 여정 명세서 분실

3.3.1 여정 명세서 분실

3.3.1.1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승객이 환불을 원할 때에는 서면 으로 춘추항공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1.2 승객이 분실 신고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자가 승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승객 본인과 분실 신고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춘추항공이 규정된 기타 자료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3.1.3 승객이 항공 운송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하거나 승객 원인으로 기 출력한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하면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 관리방법」에 따라 재출력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하면 재차 발권할 필요가 없이 본인 유효한 증명서류에 따라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3.3.1.4 승객이 신청서 제출 후 7영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춘추항공에 재차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환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3.2 항공권 분실 종료

3.3.2.1 승객이 여정 명세서 분실 신청을 하였으며 항공권 환불 전, 다시 여정 명세서를 찾게 되면 춘추항공 항공권 판매처 혹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분실 신청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여정 명세서를 반환하면 항공권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4 조 항공권 가격과 세금

4.1 항공권 가격의 적용

4.1.1 항공권가격

4.1 1.1 항공권 가격은 승객이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항공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하며 공항 지역 내, 터미널 간, 공항과 공항 간 또는 공항과 도심 간의 지상 운송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 항공 개발 기금, 유류 할증료 등 기타 세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4.1.1.2 항공권 가격은 승객이 항공권 구매일 당시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승객이 이미 구매한 항공권의 가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여정의 내용, 즉 탑승 날짜, 항공편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 및 세금과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1.1.3 항공권 가격이 다른 항공권에는 각기 다른 변경 및 환불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항공권 가격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환불 시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1.2 세금과 비용

4.1.2.1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승객에게 한해 징수하는 세금과 비용및 정부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고 공항 경영인 또는 계약운송업자가 승객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은 항공권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유형의 세금 또는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 세금 혹은 비용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4.1.2.2 유류할증료와 민항발전기금은 운송업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 수납합니다.

4.1.2.3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이나 비용을 알려주며 일반적으로 대다수 세금과 비용은 항공권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은 항공권 구매할 때 공시한 가격으로 받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이미 판매한 항공권은 세금과 비용이 변경되어도 이미 징수한 세금과 비용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4.2 특수 항공권 가격

4.2.1 신체장애 군인, 인민경찰,소방구조원

4.2.1.1 춘추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상이군인, 상이 인민경찰 및 상이 소방구조대원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 「중화인민공화국 상이 경찰증」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 소방구조대원증」을 지참하고, 동일 항공편 성인 일반 운임의 50%로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4.2.1.2 상이군인, 상이 인민경찰 및 상이 소방구조대원은 특수 항공권 가격외의 기타 적용 운임 항공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지만 상응하는 항공권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2.2 아동 항공권 가격

4.2.2.1 아동이 춘추항공 국내 항공편을 탑승할 때 성인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 가격보다 50% 높은 경우 아동 항공권 가격은 성인 일반 항공권 가격의 50%를 받습니다. 성인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 가격보다 50% 낮을 때 아동 항공권 가격은 성인 가격과 같으며 좌석을 제공합니다.

4.2.2.2 아동이 춘추항공 국제, 지역 항공편을 탑승할 때 항공권 가격이 성인 항공권 가격의 75%를 받으며 좌석을 배치합니다.

4.2.3. 유아 항공권 가격

4.2.3.1 유아가 춘추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성인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 가격의 10% 이상이면 유아 항공권 가격은 성인 일반 항공권 가격의 10%로

계산됩니다. 성인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 가격의 10% 미만이면 유아 항공권 가격은 성인 항공권 가격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아 항공권에는 좌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2.3.2 유아가 춘추항공 국제, 지역 항공편을 탑승할 때 항공권 가격은 춘추항공 공시한 적당한 운임으로 받으며 좌석 배치가 없습니다.

4.2.3.3 유아가 별도로 좌석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아동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성인 1 명당 최대 2 명의 유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동반 유아가 1 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유아는 아동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좌석을 점유해야 합니다.

4.2.4 들것/산소 사용 승객의 항공권가격

들것/산소 사용 승객의 개인 운임과 들것/산소병 부가 운임인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들것 승객은 들것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산소 **사용 승객은 구체적인 산소병 사용 수량에 따라 비용을 계산합니다.**

(1) 개인 항공권 가격: 성인 이코노미클래스 일반 운임으로 계산하며 특수 운임이나 할인 운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 제외).

(2) 들것/산소병 부가 운임의 계산 수납 방법: 승객이 들것을 사용한 비행 구간에 대해 들것이 별도로 점용된 해당 좌석 개수의 성인 이코노미클래스 일반 항공권 운임을 추가로 수납하며 산소를 사용한 승객에 대해 구체적인 산소병 사용 수량의 비용을 추가로 수납합니다.

(3) 들것/산소 사용 승객의 동행자는 실제 판매되는 좌석 가격에 따라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합니다.

4.2.5 특수 판촉 항공권 가격:승객이 춘추항공 제공하는 특수 판촉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4.2.6 단체항공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춘추항공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2.7 특수항공권 가격의 항공권에는 변경, 환불권리를 제거하는 등 제한조건을 부가할수 있습니다. 승객은 수요에 따라 합당한 항공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2.8 본 절에서 설명하는 특별 운임(아동, 유아, 상이 군인·경찰 및 소방 구조 요원 운임 포함)의 항공권 가격은 모두 위안화 10 위안을 계산 단위로 하며, 10 위안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합니다.

4.3 어음금 지불

4.3.1 승객은 국가에서 규정한 화폐와 지불방식으로 어음금을 지불해야 하며 춘추항공과 승객 사이에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4.3.2 수납한 항공료와 항공권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춘추항공의 운송규정에 따라 승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춘추항공에서 초과 부분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4.3.3 항공료, 세금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항공권발행지의 화페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4.3.4 항공권발행지 화페 교환이 불가능 등 이유로 춘추항공은 어떤 종류의 화페를 접수할것인지에 대해 자체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승객이 발표한 이외의 기타 화페를 사용해 지불할 경우 반드시 발표된 환율에 따라 환산한후 지불해야 **합니**다.

4.3.5 춘추항공의 직속 판매 대리지점이거나 위탁 대리인 이외의 방식으로 구매했을 때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손실이 있을 때 춘추항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좌석 지정 및 항공권 구매

5.1 일반 규정

5.1.1 승객은 춘추항공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 춘추항공 APP 모바일 클라이언트, 춘추항공 서비스 핫라인, 춘추항공 예매처 또는 공인된 항공 판매 대리점 및 춘추항공이 인정하는 기타 채널을 통해 좌석 예약 및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1.2 승객이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 시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신분증명서는 탑승 수속 시 사용하는 증명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5.1.3 승객은 춘추항공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공권 구매 기한 내에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승객의 항공권 가격과 좌석 예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5.1.4 승객이 좌석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춘추항공이 정한 기한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항공권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승객이 좌석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해당 제한 조건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5.1.5 제한 운송 대상 승객에 대해 춘추항공은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한 운송 대상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춘추항공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춘추항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1.6 승객이 연결 항공편을 구매할 때는 각 지역 공항에서 규정하는 항공편 최소 연결 시간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승객이 구매한 연결 항공편의 연결 시간이 최소 연결 시간보다 짧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1.7 춘추항공은 특정 항공권 가격의 항공권에 대해 제한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변경, 환불, 전항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항공권 변경, 환불, 전항 조건을 안내합니다.

5.1.8 악의적인 좌석 점유 또는 허위 항공권 구매를 한 승객에 대해 춘추항공은 상황에 따라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2 개인정보

5.2.1 승객은 춘추항공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본 조건 이행 목적, 즉 좌석 예약, 항공권 구매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준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승객이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 신청을 제출하는 즉시, 춘추항공이 항공운송 계약(본 조건 포함)

이행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춘추항공 관련 부서, 기타 관련 항공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춘추항공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안전 관리 조치를 통해 승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승객은 춘추항공에 춘추항공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본 조건의 일부가 아닙니다.

5.2.2 중국 민간항공국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객이 출입국 항공권을 구매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항공편 및 승객의 출입국을 위해서, 중국 민간 항공국은 중국 법률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 관련 조항 및 표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전용 암호화 전송 방식을 통해 승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사와 중국 민간 항공국은 중국 법률, 규정 및 관련 정보 보안 기술 표준 문서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실행하고, 승객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며 데이터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정보 처리자에게 검색 및 복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기할 때 필요한 경우에 수정, 보완 및 삭제 등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정보가 불법으로 처리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정보 처리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관련 내용 및 「승객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안내서」(링크: https://www.ch.com/departure-notic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초과판매

6.1 일반 규정

6.1.1 더 많은 승객의 여행 수요를 만족하고 일부 승객의 임시 여행 계획 취소로 인한 항공편 좌석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춘추항공은 일부 항공편에서 적절한 오버부킹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춘추항공은 노선, 항공편 횟수, 시간, 기종 및 연결 항공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편별 오버부킹 비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오버부킹으로 인해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6.1.2 오버부킹으로 인해 일부 승객이 원래 예정된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춘추항공은 자발적으로 여행 일정 포기를 신청하는 승객을 모집하고, 협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분한 수의 자원 신청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 탑승 규정에 해당하는 승객을 제외하고, 춘추항공은 수속 시간 순서에 따라 늦게 도착한 일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춘추항공은 오버부킹으로 인해 여행 일정을 포기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6.2 자발적 일정 포기 희망자 모집 및 우선 탑승 원칙

6.2.1 항공편에 오버부킹이 발생한 경우, 춘추항공은 항공편 출발 전에 전화, 문자, 안내문 또는 현장 방송 등을 통해 항공편 오버부킹 정보를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여행 일정 포기를 희망하는 승객을 모집하며 관련 보상 및 서비스 기준을 안내합니다.

6.2.2 우선적 탑승 규칙**:**

(1) 긴급한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승객**(**동반 승객 포함**)**

(2) 기증한 인체 장기를 소지하고 있는 인체 장기 획득 조직 직원(OPO)

(3) 춘추항공의 동의하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 (노인, 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기내 반려동물 동반 승객 및 성인 동행이 없는 아동) 과 그들에게 필수적인 동반자, 그리고 만 12 세 이상 만 18 세 미만으로 단독 탑승하는 미성년 승객

(4)응급 진료, 중증환자 간병 또는 그 밖에 생명·신체의 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승객

(5) 유효한 신분 증명을 소지한 현역 군인, 경찰 및 소방**원**

(6)환승 시간이 짧은 연결여정 항공편의 좌석이 확보된 승객

(7)단체 승객 연결여정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긴급한 여행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승객(예: 비자 만료 임박 등)

6.3 초과판매에 따른 배상 및 변경 환불 기준

6.3.1 초과판매로 예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선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6.3.1.1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은 200RMB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3.1.2 변경 보상: 종합 지연 시간(기존 항공권의 출발 예정 시간과 변경 후 항공권의 출발 시간 차)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시간 미만 지연: 200RMB 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2(포함)– 4시간(비 포함) 지연: 400RMB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4(포함)이상지연: 600RMB 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6.3.2 환불을 선택한 승객에 한해서는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후속 항공편을 선택한 승객에 한해서는 비자발적 변경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3.3 후속 춘추항공편이 없거나 후속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이 당초 항공편보다 3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후속 항공편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동의를 얻은 후 춘추항공은 승객을 위해 당일 다른 운송업자의 항공편 일반석을 구매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규칙에 따라 지연 보상을 제공하며, 일반석을 초과하는 비용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승객이 상기 조치를 수락한 경우, 기존 춘추항공 항공권에 대한 운임은 별도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6.3.4 연속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경우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따라 초과판매한 구간에 대해 현금으로 배상하며 나머지 비행구간에 한해서는 승객의 행선지 배치에 따라 승객에게 무료 환불 및 변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3.5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초과판매를 통지받고, 승객이 항공권 변경을 선택하고 후속 항공편이 예정되었던 항공편보다 4시간이상 차이가 나면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00위안의 숙박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3.6 항공편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해당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7조 항공편 시간표 조정, 지연, 취소, 비상 착륙

7.1 일반 규정

7.1.1 항공권 판매 후, 춘추항공은 합리적인 판단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항공편 시간표 또는 기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춘추항공은 승객이 항공권 예약 시 남긴 연락처를 통해 항공편 시간표 변경을 통지하며, 승객이 남긴 연락처 오류로 인해 춘추항공이 승객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1.2 춘추항공은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공편 지연, 취소 또는 비상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춘추항공이 상기 의무를 다했거나, 불가항력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된 경우, 중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2 항공편 지연, 취소, 비상 착륙 후 서비스

7.2.1 항공권 서비스

7.2.1.1 항공편 출항 지연, 취소, 회항, 조기 출발 또는 예정 출발시각·예정 도착시각이 15 분 이상 변경된 경우, 승객은 본 조건 제 8.2 항 또는 제 9.2 항에 따라 비자발적 여정 변경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춘추항공에서 제공한 대체 항공편을 수락한 후, 승객의 사유로 다시 변경 또는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건 제 8.3 항 또는 제 9.3 항의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2.1.2 승객이 춘추항공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항공편을 놓치거나 탑승하지 못한 이후, 춘추항공이 해당 항공편의 지연 또는 결항 등 비정상 운항 사실을 공지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의 변경 및 환불에 대하여 자발적 변경·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7.2.1.3 승객이 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환불 수속을 완료한 후 해당 항공편이 비정상 운항으로 발표된 경우, 기존에 지불한 변경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2.1.4 연결 항공편의 경우, 특정 구간에 지연, 시간 앞당김, 시간표 조정 또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은 본 조건의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구간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승객은 전체 연결 일정에 대해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로 일괄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2.2 정보 서비스

춘추항공은 출항 지연, 항공편 시간 앞당김, 취소 또는 비상 착륙 발생 시 규정에 따라 항공편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7.2.3 기내식 및 숙박 서비스

7.2.3.1 춘추항공 사유로 인해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출항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춘추항공은 항공편 지연 시간, 식사 시간대 및 항공편 운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객에게 기내식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2.3.2 춘추항공 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출항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춘추항공은 승객의 기내식 및 숙박 준비를 협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7.2.3.3 원인에 관계없이 국내선 항공편이 경유지에서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춘추항공은 규정에 따라 경유 승객에게 기내식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2.3.4 원인에 관계없이 국내선 항공편이 비상 착륙한 경우, 춘추항공은 규정에 따라 비상 착륙 승객에게 기내식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2.4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증명서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춘추항공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7.2.5 원인에 관계없이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춘추항공은 그 외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7.2.6 항공편 지연, 취소 또는 비상 착륙 발생 시 책임 범위에 관하여, 춘추항공은 본 조건 제 7.2 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춘추항공은 그 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적용되는 국제협약, 법률 또는 행정규정의 강행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8조 항공권 변경

8.1 일반 규정

8.1.1 항공권의 변경에는 승객 자발적 변경과 비자발적 변경이 있습니다.

8.1.2 변경을 요구할 때 항공권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8.1.3 항공권이 변경후 항공권 유효기간은 원래 항공권 작성 및 결제일 혹은 실제 출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8.2 비자발적 변경

8.2.1 승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항공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춘추항공 및 춘추항공 판매 대리점은 승객에게 1 회에 한해 비자발적 변경을 처리하며,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항공편 출항 지연, 취소, 항공편 시간 앞당김, 운항 노선 변경 또는 운송인의 원래 항공편 운항 불가 등의 경우

(2) 춘추항공의 사유 또는 춘추항공의 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의 도착이 지연되어, 후속 연결 항공편의 연결 시간이 최소 연결 시간(MCT)보다 짧아짐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8.2.2 본 조건 제 8.2.1 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승객이 항공편 또는 여행일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여정변경에 해당하며, 원래 항공편 출발일을 기준으로 전후 10 일 이내(출발 당일 포함)의 춘추항공 동일 노선 항공편으로 1 회에 한하여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이용 가능한 동일 노선 항공편이 없는 경우, 춘추항공은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이용 가능한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변경 조치합니다.

8.2.3 춘추항공은 항공운송인의 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8.3 자발적 변경

8.3.1 승객이 자발적으로 항공편 또는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춘추항공 및 그가 인가한 판매 대리점은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고 시간이 허용되는 조건 하에, 공시된 자발적

변경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경우 승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차액 및 여정변경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본 조건 제 8.3.2, 8.3.3 및 8.3.4 항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8.3.2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 「중화인민공화국 상이 경찰증」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 소방구조대원증」에 의해 성인 일반운임의 50%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항공권을 구매한 상이군인, 상이 인민경찰 및 장애 소방구조대원이 항공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여정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춘추항공이 공시한 기타 좌석 할인 운임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 및 이용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8.3.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영아 항공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여정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좌석을 점유하는 영아 항공권의 변경은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8.3.4 아동 항공권의 변경은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이용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3.5 변경 후 항공권 가격이 원래 항공권 가격보다 높은 경우, 승객은 항공권 가격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변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 항공권 가격이 원래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 승객은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원래 항공권을 환불받은 후 새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8.3.6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자발적으로 운송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 운송조건의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3.7 연결여정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여정변경 규정에 따라 구간별로 여정변경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8.4 항공 노선 변경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자발적으로 항공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5 단체 승객

단체 승객의 항공권 변경 요청은 원래 발권 경로에 연락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환불

9.1 일반 규정

9.1.1 환불은 승객의 자발적 환불과 비자발적 환불로 나뉩니다.

9.1.2 승객이 자발적에 의해 여정을 변경하고자 환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9.1.3 승객은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에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하면 처리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이미 항공 운송 전자 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출력하였으면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은 전자 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춘추항공에 반납해야만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9.1.4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객은 항공권 구매후 180일 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당사는 결제 통화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승객의 환불 신청은 은행을 통하여 처리됩니다.

9.1.5 승객이 환불을 신청하면 원래 매표 지점이나 춘추항공 직속 채널로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수상품 항공권에 있어서 환불 지점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현금 및 POS 용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승객의 환불은 원래 항공권을 구매하는 매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9.2 비자발적 환불

9.2.1 비자발적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9.2.1.1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항공권 비용 및 세금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9.2.1.2 항공권을 일부 사용하였을 경우 원래 항공권 가격에서 이미 사용한 구간의 항공권 비용을 공제하여 환불하며, 환불 금액은 항공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환불하는 금액이 구매한 항공권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2.2 항공편이 항공권에 명시되지 않은 경유지에 착륙하여 승객이 이로 인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착륙 지점부터 원래 도착 지점까지의 해당 구간 운임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 금액은 원래 항공권의 할인율 또는 좌석 등급에 따라 계산되며, 승객이 실제 지불한 총 운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간 운임 계산은 우선적으로 운송인의 해당 구간 공시 운임을 적용하며, 해당 공시 운임이 없는 경우 착륙 지점부터 원래 도착 지점까지의 열차 일반석 운임으로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9.2.3 승객이 자발적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항공권 비용의 차액을 납부한 후 새 항공편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자발적 환불의 조건에 부합하며 승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항공권 전액과 세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9.3 자발적 환불

9.3.1승객이 자발적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을 경우, 본 조의 제9.3.2, 9.3.3, 9.3.4, 9.3.5, 9.3.6, 9.3.7 항에서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춘추항공에서 규정한 자발적 변경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조 규칙은 단체 승객 항공권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체 항공권은 원 구매 채널에 문의하십시오.

9.3.1.1 항공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항공권의 금액과 세금을 환불합니다.

9.3.1.2 항공권이 이미 일부 사용되었으며, 이미 사용한 구간의 해당 운임, 관련 세금 및 미사용 구간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은 승객에게 반환하되, 원래 지불한 항공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3.1.3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과 전액 운임을 비교한 후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이 전액 운임 이상인 경우 미사용 구간의 운임은 환불되지 않으며, 미사용구간의 경우 세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9.3.1.4 특수 항공권가격의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만약 특수 항공권가격의 항공권에 한해 특수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9.3.2「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중화인민공화국 상이 경찰증」 및「중화인민공화국 장애 소방구조대원증」을 소지하고 성인 일반 운임의 50%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항공권을 구매한 상이군인, 상이 인민경찰, 장애 소방구조대원이 항공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춘추항공이 공시한 기타 할인 운임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 및 이용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9.3.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영아 항공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좌석을 점유하는 영아 운임 항공권의 환불은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 및 이용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9.3.4 아동 항공권의 환불은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 및 이용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9.3.5 승객 질병으로 인한 환불

9.3.5.1 환불 조건 및 서류 요구사항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질병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항공편의 정해진 출발시각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객 본인 및 동행인의 신분증명서, 관련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의 사본 또는 이미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춘추항공의 심사를 거쳐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신청 기한

모든 환불 서류는 항공편 규정 출발 시각 전까지 춘추항공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발지 공항 또는 항공편 경유지, 비상 착륙지에서 병세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여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의사 또는 현지 병원의 진단 확인에 따라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9.3.5.2 항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2) 진단서 요구사항

(a) **발급 기관:**

중국 국내: 2 급(2 급 포함) 이상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해당 병원 정보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중국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현지 정규 병원 또는 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b) **내용 요구사항:** 증명서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 날짜에 항공기 탑승이 부적합하다는 내용(또는 안정, 침상 안정, 외출 자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탑승일을 포함하는 권장 휴식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 기록, 입원 증명서 등 모두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c) **발급 시기:** 진단서의 발급일은 항공권 발권일 이후, 항공편 규정 출발 시각 이전이어야 합니다. 승객이 이미 자발적 환불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발급된 진단서는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증빙 요구사항**

(a) 해당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금액이 100 위안 이상인 의약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자 버전(전자 영수증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수증 항목에는 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진찰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중 검사비는 필수 항목입니다.

(b)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보증금 증명서 또는 병원 비용 청구 내역서(모두 병원 직인 날인 필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 군인 승객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아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장교증, 병사증 등 유효한 군인 신분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증빙은 진실하고 유효해야 하며, 재정부, 세무국 등 공식 플랫폼 또는 수동 방식으로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검증에 실패할 경우 서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서류 심사 및 보완

(a) 춘추항공은 모든 서류를 심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신청에 대해서는 승객에게 10 일 이내에 보완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승객의 진료 장소가 해당 항공편 출발지, 목적지, 주소지 또는 상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해당 장소를 방문하게 된 합리적인 증빙(예: 호텔, 교통 예약 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거나 보완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3.5.2 질병으로 인한 환불 금액 계산

(1) **항공편 출발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미사용 모든 구간 운임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항공편 경유지 또는 비상 착륙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구간의 운임(계산 방식: 출발지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일반 운임 × 승객 원래 구매 할인율)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합니다(계산 결과 잔액이 없는 경우 환불하지 않음). 이미 사용한 구간의 세금 및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총 환불 금액은 실제 지불한 총 운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비상 착륙지부터 원래 목적지까지 적용 가능한 운임이 없는 경우, 해당 구간의 열차 입석 운임으로 환불합니다.

9.3.5.3 동반 승객 환불

질병에 걸린 승객의 동반자는 동시에 수수료 면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질병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 예약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환불 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병 승객과 동일한 주문에 있지 않은 경우, 호적부,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유효한 관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환불 인원 제한:

(a) 기본 상한: 성인 2 명 및 아동 1 명

(b) 유효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 명(성인 및 아동 포함)까지 확대 가능

(c)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반 승객은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3.5.4 공정하고 질서 있는 항공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춘추항공은 질병으로 인한 환불 신청 자료를 심사합니다. 위조 진료 기록, 위조 진단 증명서 등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춘추항공은 관련 승객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으며, 위약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를 보유합니다.

9.3.6 승객 사망에 따른 환불

9.3.6.1 승객이 여행 시작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승객의 유해는 항공 **승객** 운송 방식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9.3.6.2 대리인이 사망한 승객의 항공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승객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기관,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가 발급하고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 화장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제출하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항공권의 일부 구간이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한 구간의 운임,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9.3.6.3 사망한 승객의 동반 승객은 동시에 수수료 면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망한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 예약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불을 신청할 것

(2) 사망한 승객과 동일한 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유효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환불 가능 인원

(a) 기본 적용 인원: 성인 2 명 및 소아 1 명 이내

(b) 유효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성인 및 소아를 포함하여 최대 5 명까지 적용 가능

(c)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반 승객의 경우에는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3.7 승객의 친족 사망에 따른 환불

9.3.7.1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사망한 가족의 사망증명서(공안기관,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가 발급하고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 화장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와 승객과 해당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불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항공권의

일부 구간이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한 구간의 운임,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9.3.7.2 본 조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및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손자녀 및 외손자녀를 포함합니다.

9.3.7.3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승객의 환불은 구매한 항공권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9.3.8 연결여정 항공권 또는 연결여정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각 구간별 환불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9.4 단체 승객

단체 승객의 항공권 변경 요청은 원래 발권 경로에 연락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9.5 환불을 거절할 권리

9.5.1 승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춘추항공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 운송조건에 규정된 자발적 환불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항공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환불을 신청한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환불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5.2 승객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송환된 경우, 이미 이용한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9.6 환불방식

9.6.1 일반적으로 춘추항공은 승객이 결제한 방식에 따라 같은 결제 방식과 통화로 항공권을 환불합니다. 춘추항공은 유효한 환불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환불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은 금융기관의 처리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9.6.2 환전 차액으로 인해 승객의 카드에 환급된 항공권 운임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회사에서 기재한 원 거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이런 차액에 대해 춘추항공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9.7 환불수취인

9.7.1 춘추항공은 항공권에 규정된 성명에 따라 승객 본인에게만 환불할 권리가 있으며 결제인 신분 증명과 결제 증명을 제시한 인원에게 환불합니다.

9.7.2 항공권에 규정된 승객이 운임 납부자가 아니면 춘추항공은 원 결제 방식에 따라 운임을 결제자 또는 기타 지정인에게 환불합니다.

9.7.3 승객은 춘추항공이 지정한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환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항공권에 규정된 승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승객과 수취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9.7.4 춘추항공은 전자 여정 명세서 원본을 소지하고 제9.7.1、9.7.2、9.7.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승객에게 정당한 환불로 간주하여 운임을 환불합니다. 이로써 춘추항공은 즉시 관련 운송 책임을 해제합니다.

제10조 항공기 탑승

10.1 탑승 수속

10.1.1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항공편 탑승 수속 마감 시간 전까지 위탁 수하물 및 탑승 증명(종이 또는 전자) 발급을 포함한 탑승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10.1.2 각 공항의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상이하므로, 승객은 탑승 항공편 공항의 구체적인 시간 제한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 항공편을 놓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10.1.3 승객이 정시에 춘추항공의 탑승 수속처 또는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거나,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운송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편 정상 운항을 위해 춘추항공은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0.1.4 항공기 탑승 실패

(1) **춘추항공의 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승객이 항공기 탑승에 실패한 경우, 자발적 변경 또는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환불을 처리합니다.

(2) **춘추항공의 사유**로 승객이 항공기 탑승에 실패한 경우,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환불을 처리합니다.

10.1.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 승객에 대해 춘추항공은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구매한 항공권은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1.6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승객은 탑승 수속 시 예약 결제에 사용된 해외 발행 신용카드(JCB, VISA, MasterCard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카드 명의자가 가족 등 제 3 자를 위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의 원본 또는 카드 앞·뒷면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카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카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확인 절차에 실패한 경우, 춘추항공은 탑승 수속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실은 승객 본인이 부담합니다.

10.2. 항공기 좌석 지정

10.2.1 춘추항공은 승객들이 좌석 지정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나, 특정 좌석의 제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2.2 춘추항공은 안전, 보안 또는 운항상 필요에 따라, 기내 좌석을 지정하거나 재배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승객이 이미 탑승하였거나 착석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탑승 수속 시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된 경우, 직원은 해당 좌석에 따른 안전 의무를

설명하고 승객의 동의를 구합니다. 승객이 해당 좌석에 앉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지상 또는 기내 승무원의 평가 결과 제 10.2.2.1 항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승객을 비상구 이외의 좌석으로 재배정해야 합니다.

10.2.2.1 비상구 좌석에 배정된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비상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2) 비상구 개방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3) 비상구 조작 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4) 비상구를 개방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

(5) 비상구 개방으로 인하여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상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6) 승무원의 구두 지시 또는 수신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7) 비상구 문을 적절히 고정하거나 보관하여 비상구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

(8) 비상탈출 슬라이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작동시킬 수 있으며, 전개된 슬라이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9) 비상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

(10) 안전한 탈출 경로를 판단·선택하고 해당 경로를 따라 비상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는 능력

10.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은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1) 양팔, 양손 또는 양다리의 운동기능, 근력 또는 기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승객

(a) 비상구 또는 비상탈출 슬라이드의 조작장치에 손을 뻗을 수 없는 경우

(b) 비상구 조작장치를 잡거나 밀기·당기기·회전시키는 등의 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

(c) 비상구 문 또는 비상구 개방 장치를 밀거나 당기거나 조작하여 비상구를 개방할 수 없는 경우

(d) 날개 위 비상구 창문과 유사한 크기 및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잡아 옆 좌석 또는 뒷열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e) 날개 위 비상구 문과 유사한 크기 및 무게의 장애물을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f) 비상구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g) 장애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h)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없는 경우

(i) 비상탈출 슬라이드 전개 후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j) 다른 승객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2) 15 세 미만 또는 70 세 이상의 승객으로서, 성인 보호자·부모 또는 친족의 도움 없이 10.2.2.1 항에 규정된 능력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문서 또는 도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비상탈출 절차 및 안전지침을 읽고 이해할 수 없거나, 승무원의 구두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4) 콘택트렌즈 또는 일반 안경 외의 시각 보조 기구 없이 충분한 시력을 확보되지 않아 수 없어 10.2.2.1 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보청기 외의 청각 보조장치 없이 객실 승무원의 음성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6) 필요한 정보를 다른 승객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7)10.2.2.1 항에 규정된 역할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거나 비상구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10.3 보안 검색

10.3.1 탑승 전에 승객과 그 수하물은 반드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승객 또는 그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0.3.2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공항 또는 관련 보안 검색 기관은 법률, 규정 및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에 대해 장비 검색, 수동 검색, 구두 질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검색을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색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승객의 입회 여부, 동의 여부 또는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안 검색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의 신체 상해, 수하물 또는 물품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해당 손해가 춘추항공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중국 법률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0.4 입국/경유

10.4.1 승객은 출발지, 약정된 경유지 및 목적지에 필요한 유효한 여행 서류, 비자 또는 방역 정책에 필요한 증빙을 스스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명령 및 여행 규정을 스스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승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책임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10.4.2 춘추항공 및 춘추항공의 공인 대리인이 본 조건 제 10.4.1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승객의 편의와 지원을 위한 목적이며, 춘추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이러한 서류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상기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명령 및 여행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춘추항공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4.3 춘추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경유 또는 입국이 거부된 승객을 출발지 또는 기타 장소로 다시 운송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 지점 또는 송환 지점까지의 운송을 위해 이미 징수된 요금에 대해 춘추항공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10.4.4 승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춘추항공이 벌금을 지불하거나 담보금을 제공하거나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승객에게 춘추항공이 이미 지불한 비용 또는 담보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5 승객 탑승

10.5.1 일반 규정

각 항공편의 탑승구 마감 시간은 상이하므로, 승객은 각 공항의 탑승구 마감 시간 요구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준수하여 항공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5.2 승객 탑승 누락

(1) **춘추항공의 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탑승을 못했을 경우 본 조건에 따라 자발적 변경 혹은 자발적 환불로 처리합니다.

(2) **춘추항공의 사유로** 승객이 탑승하지 못한 경우, 본 운송조건에 따라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합니다.

10.5.3 승객 잘못 탑승

(1) **춘추항공의 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승객이 항공편을 잘못 탑승한 경우, 춘추항공은 오승 승객을 가장 빠른 이용 가능한 춘추항공 항공편에 배정하여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로 운송하며, 운임의 추가 징수 또는 환불은 없습니다. 승객이 잘못 탄 도착지에서 여행 종료를 요청할 경우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춘추항공의 사정으로** 승객이 잘못 탑승한 경우, 춘추항공은 승객을 오승한 도착지에서 목적지까지 무료로 운송하거나, 무료 지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송합니다. 승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6 여행 중단

10.6.1 승객이 비자발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경우, 춘추항공 및 춘추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승객 수요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 숙식을 제공하며,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됩니**다.

10.6.2 승객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경우 운송인 및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해당 여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승객의 항공권이 자발적 변경이나 환불로 처리**됩니**다

10.6.3 탑승 수속 또는 탑승 수속을 마쳤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수하물은 항공기에 싣거나 남겨둘 수 없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비행 중 여행을 중단하는 경우 춘추항공 및 춘추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수하물을 하역해야 **합니**다.

10.6.4 항공기가 기내문을 닫은 후 기장은 불가항력 또는 승객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인되어 비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의 여행 중지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이 기내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해당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11조 수하물 운송

11.1 일반 규정

11.1.1 춘추항공에서 운송업무를 맡을 수 있는 수하물은 본 조건 제 16.34 항 정의 범위 내의 물품에만 국한됩니다.

11.1.2 국가에서 규정한 금지 물품, 운송 제한 물품, 위험 물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항공기를 오염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물품은 수하물 또는 수하물 내에 포함하여 위탁 운송**할 수**

없습니다. 춘추항공이 수하물을 접수**할 때나** 운송 과정에 수하물 중에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중단하고 승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1.2 위탁할 수 없는 수하물

아래와 같은 물품들은 수하물로 삼을수 없고 수하물 속에 넣어서도 안 되며 휴대하고 객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11.2.1 위험물

(1) 위험물(리튬 배터리 및/또는 인화성 물질 등)이 포함된 잠긴 수하물. 서류 가방, 금고 및 암호 또는 보안 장치로 잠긴 기타 수하물이 포함됩니다. 단, DGR 2.16.2.6 규정에 부합하는 장비는 제외됩니다.

(2) **폭발물, 폭파 기자재, 불꽃 제품 및 이들의 모조품. 단, 공안 기관 관계자가 공무 수행 시 탄약을 휴대하는 경우 등 항공 보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압축 및 액화 가스 등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 가연성 액체 및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 및 유기/무기 산화제.

(4) 청산가리 및 독성 살충제 등의 유독 물질.

(5) 황산, 염산, 질산, 액체 전해질이 있는 배터리, 수산화나트륨 및 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물질.

(6) 방사성 동위 원소 및 기타 방사성 물질 등의 방사성 물질. 화학 무기 금지기구(OPCW)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으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발행한 표 2-12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에 명시된 방사성 한도량을 초과하는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장치를 운송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학 제품 검측기(CAM) 또는/혹은 쾌속 경보와 검증 장비 검측기(RAID-M))

(7) 최루 가스, 후추 스프레이 및 기타 유해 물질 등 자극성 또는 무능화 물질이 포함된 움직임 저지 장치.

(8) 의약용 소형 산소 용기, 공기 용기 및 액체산소가 포함된 개인용 의료 산소장비. 다만 응급 구조가 필요할 경우 승객은 사전에 춘추항공이 제공하는 장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안전상의 이유로 제조자가 회수한 리튬 배터리, 정격 소비 전력이 160Wh 이상인 리튬 이온 배터리/배터리 팩, 리튬 함유량이 8g을 초과하는 리튬 금속 배터리/배터리 팩(리튬 배터리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이동 장치 제외) 또는 리튬 함유량이나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리튬 배터리(예: 라벨이 없는 배터리 또는 불법 라벨이 붙어 있는 배터리).

(10) 전기 충격 무기(테이저 건 등)

(11) 기내 시설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성이 강한 물질 및 냄새가 심한 물질 등 기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

(12) 개인용 안전성냥이나 안전형 라이터. 여기에는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점화기, 라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안전성냥이나 라이터'에는 마찰성냥, 만번 성냥, 소형 담배 라이터, 점화기, 라이터 연료, 라이터 가스충전통 등도 포함됩니다.

(13) 누락형 배터리가 장착된 휠체어 또는 행동 보조 장치.

(14)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휴대차는 전동 밸런스 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폴더블 스마트바이크, 전동 일륜차 등이 포함됩니다.

(15)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캐리어(스마트 라이딩 캐리어 포함), 배터리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 리튬 금속 배터리 리튬 함량이 0.3g을 초과하거나 리튬 이온 배터리 정격 에너지가 2.7Wh를 초과하는 경우

(16) 위험물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춘추항공이 발표한 「리튬 배터리 및 일반 위험물 운송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2.2 공안 기관 및 당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탄약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아 운송되는 총기는 반드시 탄약을 제거하고 안전 장치를 잠가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포장해야 합니다. 탄약의 운송은 또한 당사의 위험품 운송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1.2.3 군기, 경찰용 무기, 예를들어 전기 경찰봉, 전기 충격기 등.

11.2.4 통제된 절삭 공구. 비수, 자도(刺刀), 삼릉도(기계용 삼릉도 포함), 자동 장치가 부착된 접이식 칼 및 기타 유사한 단검, 쌍칼,삼릉도 등.

11.2.5 살아 있는 동물. 단, 본 조건 11.3.3.1 및 11.3.3.2 항에 규정한 소형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11.2.6 ICAO, IATA-DGR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기타 운송 제한 위험 물품.

11.2.7 포장, 모양, 중량, 부피 또는 특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11.3 운송 제한 물품

11.3.1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1) 전자 기기, 전자 의료 장치, 전동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 보조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리튬 배터리, 연료 전지 등 포함;

(2) 보조 배터리(충전 보조 배터리) 및 리튬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며, 기내 휴대 시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전동 휠체어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별도 규정 적용):

(a) 승객 1 인당 보조배터리(휴대용 충전기)는 최대 2 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b) 정격 에너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격에너지가 160Wh 이하인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정격에너지가 100Wh 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에 춘추항공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담배(전자 시가, 전자 파이프 및 개인용 분무기 포함)

(4) 공식 기관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

(5) 현금, 유가증권, 보석류, 귀금속 제품, 골동품, 서화, 문화재 등 고가품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 중요 서류 및 자료, 상업용 견본품, 여행서류, 개인이 정기적으로 복용하여야 하는 처방의약품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품

(6) 민간항공 당국이 별도로 정하는 기타 물품

11.3.2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는 물품

(1) 통제 물품을 제외한 날카로운 도구, 둔기 및 기타 인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 안전 및 운송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이에 한정되지 않음: 식칼, 과도, 식탁용 나이프, 공예용 칼, 메스, 가위, 강철 줄, 도끼, 짧은 막대기, 망치, 드릴(드릴 비트 포함), 끌, 송곳, 톱, 볼트 건, 네일 건, 드라이버, 지렛대, 해머, 펜치, 용접봉, 렌치, 손도끼, 작은 손도끼(태평 도끼), 버니어 캘리퍼스, 아이스 액스, 아이스 픽, 다트, 새총, 활, 화살, 벌처 자위기 등

(2) 면책 운송 수하물 및 대형 수하물

(3) 스포츠용 총기 및 탄약(공안 부서 발급 운송 허가증 필요)

(4) 자전거, 골프 용품, 스키 또는 수상 스키 용품, 볼링 용품, 낚시 용품, 서핑 보드 또는 윈드서핑 보드, 하키, 다이빙 용품, 승마 용품, 썰매, 카약, 패러글라이딩, 장대 등 스포츠 기구

(5) 민항국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품

11.3.3 특수 수하물

11.3.3.1 소형동물

춘추항공이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기는 화물칸 내 산소 공급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 소형동물의 위탁 운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실 내 반려동물 운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객실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3.3.2 장애인 보조견

(1)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생활과 업무를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특수견으로, 보조견, 청각 장애인 보조견, 시각 장애인 안내견을 포함합니다. 정서 지원 동물(정서 위안견 포함)은 인증 등의 이유로 제한되어, 당사가 운송 가능한 장애인 보조견 범위에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승객과 동행할 경우에만 운송이 허용됩니다. 장애인 승객 1 명당 동반 가능한 장애인 보조견은 1 마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항공편별 장애인 보조견 총 수는 4 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장애인 승객은 좌석 예약 시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항공편 출발 24 시간 전까지 장애인 보조견 증명서와 동물 검역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승객이 동반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승객이 직접 공항으로 데려와야 하며, 장애인 승객은 탑승 수속 시 직원에게 장애인 보조견 증명서와 동물 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장애인 보조견은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며, 직원은 승객이 보안 검색 전에 장애인 보조견이 사용하는 배설물 봉투를 비우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6) 장애인 승객은 동반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운송 중 춘추항공의 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인 보조견의 부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해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기내로 반입되는 장애인 보조견의 음식물과 식기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기내로 반입되는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 전에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좌석을 점유하거나 임의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기내 활동 범위 내 관련 승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내선 운송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 증명 문서와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국제선 운송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국가 동식물 검역 부서에서 발급한 「검역 증명서」, 「광견병 면역 증명서」

(b) 출입국 또는 경유 허가증

(c) 입국 또는 경유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명서(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상세 규정 참조)

11.3.3.3 유모차

유아 승객에게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 승객 1 인당 접이식 유모차 1 대를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성인 승객이 유모차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중량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중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 초과 중량만큼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11.3.3.4 골프 용품 / 스키 용품 / 낚시 용품 / 운동 기구

(1) 골프 용품, 스키 용품 또는 낚시 용품을 위탁하는 경우 일반 위탁 수하물로 처리합니다.

(2) 춘추항공은 경기 스포츠 및 건강 증진 운동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장비 및 용품만을 운송하며, 일반 위탁 수하물로 처리합니다. 항공기 조건이 운송에 부적합한 경우, 춘추항공은 수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위탁하는 운동 기구를 적절히 포장해야 하며, 가능하면 원래 제조사 포장이나 전문 포장을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정상적인 운영

조건에서 안전하게 싣고 내리고 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공기 주입식 운동 기구는 공기를 빼고 운송해야 합니다.

11.3.3.5 정밀 기기, 전기 기기, 악기 등 물품

(1) "정밀 기기"란 정밀 계측 기기, 정밀 천문 관측 기기, 정밀 원격 탐사 기기, 정밀 측정 제어 기기, 정밀 의료 기기 등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 통합화 및 다차원, 동적 측정 기능을 갖춘 첨단 기기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정밀 기기로는 각종 수질 분석 기기, 환경 감지 기기, 현미경, 피펫, 배양기, 건조 장비, 천칭, 분광 분석 기기,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기기, 시험 상자, 실험 소모품, 실험 기기, 생명 과학 기기, 광학 기기, 제습 정밀 기기, 물성 측정 기기, 식품 검사 기기, 의약품 검사 기기, 섬유 기기, 석유 기기, 의료 기기 등이 있습니다.

(2) "전기 기기"란 일반적으로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며,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회로 연결 및 차단, 회로 매개변수 변환을 통해 회로 또는 전기 기기에 대한 제어, 조정, 전환, 감지 및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전기 장치, 설비 및 부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데스크탑 컴퓨터, 각종 소형 가전 등의 전기 기기를 말합니다.

(3) "악기"란 음악적 소리를 내고 음악 예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악기는 민족 악기와 서양 악기로 크게 나뉩니다. 주로 트롬본, 첼로, 바이올린, 얼후, 비파, 쟁, 태평소, 트럼펫,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 색소폰, 전자 키보드, 피아노, 아코디언, 하프, 일렉트릭 기타 등이 있습니다.

(4) 정밀 기기, 전기 기기, 악기 등이 당사 비위탁 수하물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승객이 기내로 반입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량이나 부피가 비위탁 수하물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이 점유 좌석 수하물 항공권을 구매하여 점유 좌석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하여 직접 관리하고 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정밀 기기, 전기 기기, 악기 등 물품은 제조사 출고 포장 또는 춘추항공 위탁 수하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 위탁 운송이 가능합니다. 승객은 위탁 수속 시 단단한 케이스에 포장하고 내부에 충전재를 넣어 운송 중 흔들림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상을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b) 정밀 기기, 전기 기기, 악기 등 물품의 중량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3.3.6 접이식 휠체어 / 전동 휠체어

(1) 접이식 휠체어, 전동 휠체어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여행 중 보행 보조 도구입니다.

(2) 전동 휠체어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접이식 휠체어의 크기가 비위탁 수하물 규정을 초과하거나 기내에 보관 시설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 접이식 휠체어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3)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로 구동되며, 내장된 축전지 또는 리튬 배터리는 운송 과정에서 일정한 위험성을 가집니다. 전동 휠체어 위탁 시, 당사 위험물 운송 조항 중 배터리 구동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승객이 전동 휠체어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일반 승객 탑승 수속 마감 2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ㅐ출해야 합니다.

11.3.3.7 자전거

자전거는 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승객이 위탁 수하물로 운송을 고집하는 경우, 일반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전거는 완전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접이식 자전거는 자전거 핸들을 90 도 돌려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하며, 바퀴를 분리하여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반드시 공기를 빼야 합니다.

(3) 자전거의 중량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33.8 유골

(1) 유골함의 외부 포장과 유골함을 휴대한 승객의 상태가 다른 승객에게 눈에 띄지 않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승객이 요구하고 비위탁 수하물 규정을 충족하면 기내로 반입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2) 유골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춘추항공은 일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만 부담합니다.

(3) 위탁하는 유골은 밀봉된 용기나 상자에 넣고 외부에 나무 상자로 한 번 더 포장하여 완충재를 넣은 후, 가장 바깥층을 천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11.3.3.9 개인용 오락 / 인체 기능 보조용 소형 전기 기기 / 전자 기기

(1) 춘추항공은 승객이 비행 중 항공기 통신 및 항법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 기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개인용 오락, 인체 기능 보조용 소형 전기 기기(또는 전자 기기)는 예외입니다.

(2) 춘추항공은 개인용 오락 / 인체 기능 보조용 소형 전기 기기 / 전자 기기의 위탁 운송을 요구하거나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춘추항공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물품을 직접 휴대할 수 있습니다:

(a) 시각 장애인 승객이 휴대하는 흰 지팡이, 시력 보조기 및 시각 장애인용 안경

(b) 장애인 승객이 휴대하는 보행 보조 장치(목발, 의족, 전동 의수족 등 포함)

(c)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승객이 휴대하는 청각 보조 장치(인공 와우, 보청기 포함)

(d) 전기 면도기, 심장 박동기(미량의 방사성 원소(예: 폴로늄 등)를 포함하는 이식형 심장 보조 장치 포함)

(e) FM 대역이 없는 라디오

(f) 녹음기

(g) 캠코더

(h) 휴대용 전자 게임기

(i) 소형 의료용 전자 기기

(j) 액정 디스플레이 노트북(프린터 제외)

(k) 전자 시계

(l) 플래시

(m) 카메라

(n) 영화용 프로젝션 램프

(o) 소형 전기 경적

11.3.3.10 알코올 함유 음료

(1) 알코올 농도 24%(포함) 미만인 경우, 휴대 및 위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알코올 농도 24% 초과 70%(포함) 이하인 경우, 각 용기 부피는 5 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승객 1 인당 위탁 총량은 5 리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농도 70%를 초과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위탁할 수 없습니다.

(2) 승객은 알코올 음료를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위탁해야 합니다. 승객이 보안 검색 후 구역 내에서 구매한 알코올 음료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알코올 음료는 본 조건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알코올 / 알코올성 음료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표시가 완전하고 명확해야 하며 소매 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외부 포장은 견고하고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이상한 냄새나 액체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면책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송 중 발생하는 해당 수하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4) 항공편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의 법률에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지역의 적용 법률을 따릅니다.

11.3.3.11 드라이아이스

신선 식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객 1 인당 순중량 2.5kg 을 초과하지 않는 드라이아이스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포장물은 통풍구를 확보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 시 수하물에 "고체 이산화탄소" 또는 "드라이아이스"라는 문구와 드라이아이스 순중량 또는 순중량이 2.5kg 을 초과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1.3.3.12 좌석 점유 수하물

승객이 항공기 화물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정밀 악기, 파손 우려가 있는 고가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 추가 운임을 지불하고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객은 항공권 구매 및 탑승 수속 시 해당 물품의 종류, 크기 및 중량을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좌석 점유 수하물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좌석 점유 수하물에 대한 운임은 해당 항공편의 판매 시점 기준 운임을 적용합니다. **현재 국제선 및 홍콩·마카오·대만 노선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승객 1 인당 좌석 점유 수하물은 1 개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당 크기는 40cm×60cm×100cm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량은 75kg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좌석에는 독립적으로 포장된 수하물 1 개만 적재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수하물을 묶어서 하나의 좌석을 점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좌석 점유 수하물은 승객이 사전에 충분히 보강 포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외관상 파손·누출·악취 또는 돌출된 날카로운 구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객실 좌석에 안정적으로 적치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포장 상태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좌석 점유 수하물은 좌석만 점유할 뿐, 승객에게 부여되는 권리나 서비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좌석 점유 수하물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승객에게 있습니다. 물품 자체의 결함, 포장 불량 또는 승객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분실 및 항공기 시설 또는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승객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1.4 위탁 수하물

11.4.1 위탁 수하물의 수락 및 포장 요구사항

위탁 수하물은 반드시 완벽하게 포장하고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단단히 묶어 일정한 압력을 감당할 수 있고 정상적인 조작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싣고 부릴 수 있으며 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여행가방, 여행용 가방과 핸드백 등은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어야 합니다.

(2) 두 개 이상의 소포를 하나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3) 수하물 위에 기타 물품을 꽂아 넣지 말아야 합니다.

(4) 큰 바구니, 그물 주머니, 새끼, 가마니,비닐봉투 등을 외포장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5) 승객은 수하물을 운송하기 전에 이름 또는 식별하기 쉬운 기타 개인 표시를 착용해야 합니다.

(6) 수하물을 포장할 때 톱밥, 겨, 지푸라기 등을 받침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4.2 위탁 수하물의 중량, 크기 제한

위탁 수하물의 크기는 40×60×100c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하물의 어느 한 변이라도 위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세 변의 합이 203cm(80 인치) 이하여야 하며, 가장 긴 한 변은 160c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스키, 서핑보드 등 운동 기구는 가장 긴 한 변이 180c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내선: 개당 중량은 50kg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선 및 지역선: 개당 중량은 32kg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4.3 위탁 수하물 무료 수하물 허용량

11.4.3.1 춘추항공은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 유형, 노선 거리 등에 따라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합니다. 각 항공권 유형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조건 제 18.1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4.3.2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에 가는 2 명(포함) 이상의 동반 승객이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수하물 위탁 수속을 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각자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4.3.3 장애인이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보조 기구(접이식 휠체어, 지팡이, 의족 등)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무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들것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60kg 입니다.

11.4.3.4 추가 좌석 점유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점유 좌석의 운임 등급과 점유 좌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1.5 비위탁 수하물

11.5.1 각 승객은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비위탁 수하물 1 개로 제한되며, 중량은 7kg 을 초과할 수 없고 크기는 20×30×40cm(바퀴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휴대

수하물 상품 또는 프리미엄 플라이 시리즈 상품을 구매한 승객은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비위탁 수하물 중량이 10kg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크기는 20×40×55cm(바퀴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제한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11.5.2 객실로 반입되는 수하물은 승객의 앞좌석 아래 또는 객실 상단의 짐칸에 넣을 수 있어야 하며, 제 11.5.1 조에 따라 크기 초과, 중량 초과, 수량 초과 (이하 '3 초과'라 함)로 판단되는 물품은 객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1.5.3 관련 규정에 따라 '3 초과(크기·중량·개수 초과) 수하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민간항공 운송 및 운영 질서를 교란한 승객은 '기내 소란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춘추항공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미사용 항공권은 본 조건의 자발적 변경 및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6 무게가 초과된 수하물 비용

11.6.1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해당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 중량 수하물이라고 하며,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1.6.2 중량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할 경우 반드시 중량 초과 수하물 항공권이나 전자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11.6.3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조건 제 18.2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7 성명 가치

춘추항공은 잠시 성명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8 검사권

춘추항공은 운송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객과 함께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규정은 제 10.3 조에 따른

보안검색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수하물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9 운송 접수 요구

11.9.1 승객은 반드시 유효한 항공권에 의거해 수하물을 위탁시켜야 합니다. 춘추항공은 마땅히 수하물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11.9.2 춘추항공은 항공편이 항공기문을 닫는 당일, 탑승 수속을 처리할 때에만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11.9.3 춘추항공은 승객이 위탁하는 수하물마다 수하물 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 쿠폰을 승객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 승객의 비위탁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함께 무게를 측정한후 승객 자체로 관리해야 합니다.

11.9.4 위탁 수하물 중 운송 과정에서 책임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춘추항공은 수하물 위탁 전에 승객에게 면책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승객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면책확인서에 서명한 후 해당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그로 인한 결과 및 위험은 승객 본인이 부담합니다. 승객이 면책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9.5 장애인 보조 장비의 경우, 승객이 운송 전에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은 면책 각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1.10 수하물 운송

11.10.1 승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해당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다만, 운항·안전 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동일한 항공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운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동일 항공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춘추항공은 적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후속 항공편으로 우선 운송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승객의 사유로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승객이 직접 공항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춘추항공이 해당 수하물을 승객에게 무상으로 인도합니다.

11.10.2 초과수하물은 항공기 적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다만, 운항·안전 또는 보안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운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적재 여건상 운송이 불가능하고, 승객이 사전에 춘추항공과 별도의 운송 조치를 협의하지 않은 경우,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이용 가능한 후속 항공편을 통한 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춘추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11 규정 위반 수하물

승객의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 중에 국가에서 규정한 운송 금지 물품이나 제한 휴대 물품 또는 위험 물품 등이 들어 있을 경우 수하물 전부를 규정 위반 수하물이라 부릅니다. 규정 위반수하물에 관련해 춘추항공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11.1 출발지에서 규정 위반 수하물을 발견하면 춘추항공은 이 수하물운소를 거절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운송 업무를 맡았다면 운송을 취소할 권라가 있으며 규정위반 물품을 꺼낸후 운송하였다면 이미 수납한 무게초과 수하물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11.11.2 경유지점에서 규정 위반 수하물을 발견하였다면 운송을 즉시 중단하고 무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11.11.3 규정 위반 수하물중의 국가에서 규정한 운송금지 물품, 휴대제한 물품 또는 위험 물품은 관련부서에 넘겨 처리합니다.

11.11.4 승객은 춘추항공에 규약위반 수하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클레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11.12 수하물반송

11.12.1 춘추항공의 원인으로 승객에게 기타 항공편을 안배해야 한다면 수하물 운송도 상응하게 변경시켜주며 이미 수납한 무게초과 수하물에 한해서는 많이 돌려주고 적게 보충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이미 납부한 성명 가치 부가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1.12.2 승객의 원인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송을 취소할 때 수하물 반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승객이 출발지에서 수하물 반송 요구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환불하였다면 반드시 이미 운송을 접수한 수하물도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이상의 경우에 수납했던 무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2) 승객이 중도 연결지점에서 수하물 반송을 요구할 경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비행구간의 무게 초과 수하물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11.13 수하물 교부

11.13.1 승객이 항공편이 도착한후 즉시 공항에서 수하물 꼬리표의 식별 쿠폰에 따라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넘겨주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11.13.2 만약 승객이 수하물을 바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춘추항공은 수하물이 도착한 이튿날부터 보관료를 수납합니다. 승객 수하물중의 부식되기 쉬운 물품에 한해서는 춘추항공에서 수하물이 도착해 24시간이 지난후부터는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11.13.3 위탁 수하물이 예정 시각보다 지연되어 도착한 경우, 춘추항공은 즉시 해당 승객에게 수하물 도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승객이 직접 배송을 요청하면, 춘추항공은 위탁 수하물을 승객에게 무상으로 배송하거나 승객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연도착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1.13.4 승객이 수하물을 인도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탁 수하물이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1.13.5 춘추항공은 승객 및 위탁 수하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나, 그러한 확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수하물을 수령할 때 수하물 식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해당 수하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관련 확약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승객은 해당 수하물 인도로 인하여 춘추항공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손해 또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13.6 11.13.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하물을 인도받는 자가 실제 승객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춘추항공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14 교부할 방법이 없는 수하물

수하물이 도착한 그 다음날부터 90일 사이에 수령해가는 사람이 없는 수하물에 한해서 춘추항공은 교부할 방법이 없는 수하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수 있습니다.

11.15 비정상적으로 운송된 수하물 처리

11.15.1 수하물 운송과정에서 수하물이 지체, 유실, 손상되면 춘추항공 또는 권한부여지상서비스대리인은 승객과 함께 수하물운송사고기록 또는 수하물파손사고기록을 작성하고 정황과 원인을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승객과 관련 부서에 회답해야 합니다. 수하물 배상이 발생할 경우 시발지, 중도 연결지점, 목적지에서 모두 처리할수 있습니다.

11.15.2 춘추항공 또는 춘추항공 지상서비스 대리인의 사정으로 현지인이 아닌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승객과 동승하여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승객의 여행생활에 불편을 끼쳤다면 임시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1.15.2.1 다음 상황에서 본사는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승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하물을 항공기와 함께 위탁할 수 없습니다;

(2) 목적지는 승객의 거주지입니다;

(3) 수하물은 당일 도착합니다.

11.15.2.2 임시 생활용품 보상금은 승객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연 도착 수하물 개수에 따라 계산하며, 국내선은 개당 100위안, 국제선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항공편은 개당 300위안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11.15.2.3 임시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급 후.수하물을 찾았을 경우 보상 비용을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1.16 수하물 배상 청구 기한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본 조건 제16.4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춘추항공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배상요구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또는 복사본), 수하물 꼬리표의 식별 쿠폰, 수하물운송사고기록 또는 수하물파손사고기록, 수하물 내용과 가격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나 기타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항공기에서의 행위

12.1 불법 방해 행위와 교란 행위

12.1.1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항공기 또는 항공기 내 인원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장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장은 해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춘추항공은 해당 승객에게 어느 지점에서든 하차를 요구하거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객은 기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12.1.2 불법 방해 행위와 교란 행위의 처분

12.1.2.1 불법 방해 행위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미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방해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항공기 불법납치

(2) 사용 중인 항공기 파손

(3)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인질을 억류하는 행위

(4) 항공기, 공항 또는 항공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5) 범죄의 목적을 위하여 무기 또는 위험장치, 자재를 항공기 또는 공항에 반입하는 행위

(6) 사용중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망, 심각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7) 비행 중 또는 지상의 항공기, 공항 또는 민간 항공 시설 및 장소에서 승객,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12.1.2.2 교란 행위는 항공기에서 행동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항 직원 또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항 또는 항공기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좌석 및 짐칸을 강제로 점유하는 자

(2) 난투극 및 소란 행위

(3) 휴대전화 또는 기타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의 불법 사용

(4) 구조 장비 등 항공 설비를 절취, 고의적 손괴 또는 무단 이동하거나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

(5) 흡연(전자담배 포함) 및 불씨 사용

(6) 객실 내 인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경우

(7) 음란물 및 기타 불법 인쇄물을 유포하는 행위

(8)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9) 비행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항공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12.1.2.3 처분방법

춘추항공은 국가법률 및 민간항공법규에 따라 승객의 불법 방해 행위와 교란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제지, 제지 조치 또는 단속 조치를 취하며, 이륙 전 또는 착륙 후 하차를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질서와 민간항공 운송 질서를 교란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협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 권유나 경고를 듣지 않고, 흡연으로 인해 연기 경보기가 작동하고,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승객에 대해 춘추항공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인계합니다.

12.1.3 승객이 제 12.1.2 항에 규정된 행위로 인해 춘추항공으로부터 운송을 거부당한 경우, 해당 항공편의 운임 및 세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나머지 미사용 항공권은 본 운송조건의 '자발적 변경' 및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2.2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규정

12.2.1 사용이 허용되는 휴대용 전자기기

(1) 휴대용 녹음기

(2) 보청기

(3) 심장박동기

(4) 전기면도기

(5)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좌석 등받이 수납 주머니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으며, 사용 시 항공기 항법 및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형 휴대용 전자 기기. 이에 한정되지 않음:

(a) 비행 모드 기능을 가진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예: 이동전화, 태블릿 등). 단, 비행 중 비행 모드를 켜야 하며, 이는 셀룰라 이동통신(음성 및 데이터) 기능을 꺼야 함을 의미합니다 ;

(b) 전자책 ;

(c) 송신출력이 100mW 이하인 무선 전송 기능의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

(6) 생명 유지에 사용되는 의료 전자 장비 및 장치(해당 인증 문서 발행 가능).

12.2.2 사용이 제한된 휴대용 전자기기

송신 출력 100mW 이하의 무선 전송 기능을 가진 대형 휴대용 전자기기(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예: 노트북 등)는 비행의 결정적 단계(이륙 및 착륙)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순항 단계에서는 비행 모드를 켠 상태에서 사용이 허용됩니다.

12.2.3 공중에서 사용이 금지된 휴대용 전자기기

송신출력 100mW(포함) 이상의 출력으로 송신 기능을 끌 수 없는 휴대용 전자기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셀룰라 이동 통신(음성 및 데이터) 기능을 끌 수 없는 휴대용 전자기기, 예를 들어 비행 모드가 없는 모바일, 모바일 Wi-Fi 등.

(2) 위성 전화

(3)무전기

(4)리모컨이 부착된 장남감 혹은 기타 전자기기

(5)주요 교통 운송 전문 장비(리튬 배터리 및 무전 발사 장치)

12.2.4 항공편의 전 구간에서 리튬배터리 보조 배터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12.3 항공편 금연

춘추항공은 전 항공편에서 모두 흡연을 금지합니다. 기내의 모든 구역에서 흡연 및 대체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12.4 **안전벨트**

12.4.1**승객이 기내에서 좌석에 앉았을 경우 반드시 전반 비행 구간에 거쳐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합니다.**

12.4.2 유아는 성인이 안고 있거나 유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승객 서비스

13.1 일반적 설명

13.1.1 춘추항공은 항공기 안전과 정상 항공편을 담보하고 양호한 서비스 제공을 준칙으로 삼아 문명하고 예의 바르며 친절하고 빈틈없는 서비스 태도로 공중과 지면에서의 승객 운송 전반 과정에 거쳐 여러가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2 춘추항공은 승객에게 공항 구역 내, 공항과 도시사이 또는 같은 도시내 공항과 공항사이 지면운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면운송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나 실수에 대해 춘추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춘추항공에서 별도로 체결한 유상 서비스 계약에 따라 승객에게 지면 운송을 제공할 경우 본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1.3 연결여정 항공편의 연결지점에서의 지면숙식비용**과 교통비용**은 승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합니**다.

13.1.4 항공 운송 과정에 승객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춘추항공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응급 구조해야 합니다.

13.1.5 일부 항공편의 "프리미엄 플라이" 상품을 제외하고, 춘추항공 항공편에서는 무료 기내식 및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기내식, 음료, 기내 판매 상품, 프리미엄 좌석 선택, 선불 수하물 등 자발적 구매가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13.2 안내 정보

고객님의 여행 경험 향상을 위해,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항공편 운항 현황, 좌석 선택, 탑승 수속 및 탑승 알림, 보험, 수하물 허용량 및 기내식 구매, 회원 규정, 목적지 상품 추천 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약 또는 탑승을 선택하시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공식 채널 또는 안내문 내 수신 거부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정, 고객님의 수신 거부 또는 기타 춘추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보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 춘추항공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공식 APP 또는 문자메시지 채널을 통해 항공편 최신 현황을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3.3 제3자 서비스

13.3.1 만약 춘추항공에서 승객에게 제3자가 제공한 항공서비스외의 서비스를 안배하거나, 춘추항공에서 지상 서비스를 제시하거나, 여관 예약 또는 차량 임대 등 제3자가 (항공에 관련되지 않은)운송 또는 서비스 환 또는 수납 증명서를 제공하면 상술한 부가 서비스를 안배할 때 춘추항공은 승객의 대리인일 뿐 승객이 이런 유형의 서비스를 받는지 여부와 서비스 품질에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별도 규정외에 춘추항공은 부가 서비스중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조항과 조건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3.3.2 승객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일부는 항공운송으로, 일부는 기타 운송 수단으로 수행되는 복합 운송의 경우, 본 조건의 규정은 항공운송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단, 기타 수단에 의한 운송이 명시적으로 항공운송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본 조건은 해당 기타 운송 수단에도 적용됩니다.

13.3.3 항공운송 부분이 본 조건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본 조건은 복합 운송의 각 당사자가 항공운송 증권에 기타 운송 수단에 관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불만 접수 채널

춘추항공 고객센터 및 불만 접수 연락처:911.1524

불만 접수 이메일 주소: cs@ch.com

온라인 불만 접수 채널: 춘추항공 온라인 고객센터

제15조 손실 책임과 배상한도

15.1 일반 규정

15.1.1 항공운송 과정에서 승객에게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한 춘추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중국 법령 및 손해 발생 당시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본 운송 조건의 규정에 따릅니다. 춘추항공은 실제로 수행한 항공운송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승객의 실제 손해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 요건 및 책임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국제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운송조건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승객의 여정과 관련된 다른 항공운송인의 운송책임은 해당 운송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및 해당 운송인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5.1.2 춘추항공에서 국가의 법률, 정부 규정, 명령과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서거나 승객이 국가의 법률, 정부 규정, 명령과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임이의 손실에 한해 춘추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객의 착오로 초래된 손실은 법에 따라 춘추항공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15.1.3 춘추항공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서 정한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춘추항공은 승객(수하물 포함)에 대한 어떠한 간접 손해, 징벌적 손해, 징계적 손해, 정신적 손해 또는 기타 보상적 성격이 아닌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4 춘추항공은 오로지 자신이 이행하는 항공운송 계약에 대해서만 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춘추항공이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 운송을 위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 위탁을 처리하는 것은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15.1.5 가능한 책임 보장 시기의 늦거나 위험 커버의 미흡을 보충하기 위해 춘추항공은 제3자의 상업책임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승객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상업 보험 책임의 급부는 춘추항공이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손해 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5.1.6 본 **운송**조건에서 **규정한** 춘추항공의 책임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규정은 춘추항공의 대리인, 임직원 및 대표자와 춘추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여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임**직원,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춘추항공 및 상기 대리인, 임직원, 대표자 또는 관련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총액은 춘추항공에 적용되는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1.7 본 조건은 춘추항공이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서 춘추항공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규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5.1.8 항공운송 과정에서 승객 또는 수하물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춘추항공은「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승객의 지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손해를 발생시킨 지연이 발생한 당시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책임 한도에 따릅니다. 수하물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본 운송조건 제 15.3.7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춘추항공 또는 그 임직원·대리인이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2 승객 신체 상해 또는 사망

15.2.1 항공기 내 또는 승객의 탑승·하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승객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춘추항공은「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손해가 전적으로 승객 본인의 건강 상태에 기인한 경우에는 춘추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한도는 해당 사고 발생 당시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책임 한도에 따릅니다. 전술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춘추항공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손해가 춘추항공 또는 그 임직원·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 손해가 전적으로 제 3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15.2.2 승객 외의 타인이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이 승객 본인의 과실 또는 기타 부적절한 작위·부작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촉진된 것이

증명된 경우, 그러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촉진한 과실 또는 기타 부적절한 작위·부작위의 정도에 상응하여 춘추항공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합니다.

15.3 수하물 배상

15.3.1 승객의 비위탁 수하물(휴대 개인소지품 포함)이 항공기 내 또는 승객의 탑승·하기 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춘추항공은 운송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항공운송 기간 중 멸실·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15.3.2 춘추항공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 아닌 경우, 춘추항공은 승객의 비위탁 수하물 또는 좌석을 점유한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3.3 수하물의 손실은 완전히 수하물의 자연 속성, 품질 또는 결함에 **기인한 경우,** 춘추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3.4 승객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다치거나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춘추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객의 수하물내에 들어있던 물품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타인의 물품 또는 춘추항공재산에 손실을 조성했다면 승객은 마땅히 춘추항공의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5.3.5 승객이 위탁한 수하물내에 본 조건 **11.3.3(5)**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있을 경우 분실했거나 파손되면 일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5.3.6 연결여정에서 춘추항공은 운송업무를 담당한 항로에서 발생한 수하물 손실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5.3.7 본 운송조건에 따라 춘추항공이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 및 비위탁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1 인당 수하물의 멸실·분실·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손해 발생 당시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책임 한도에 따릅니다.

15.3.8 승객의 위탁 수하물 및 그 수하물 중 어느 하나의 물건이 멸실이나 분실, 훼손한 경우 해당 손해 입은 수하물이나 물건의 무게만으로 춘추항공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정합니다. 해당 손해 입은 수하물이나 물건의 무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승객 1 인의 손해를 입은 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해당 승객이 누리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으로 합니다.

15.3.9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수하물을 배상할 때 배상 받을 수하물이 부과된 중량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급해야 합니다.

15.3.10 정부 관련 부서, 공항 운영 기관, 보안 검색 기관이 수행하는 수하물 검사 관련 행위로 인해 수하물 지연, 물품 분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춘추항공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3.11 이미 배상한 분실했던 수하물을 되찾았을 경우 춘추항공은 최대한 빨리 승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을 수령해야 하며 전**액**의 배상금을 반납해야 하며 임시 생활용품보상비용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승객이 사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 춘추항공은 전**액**의 배상금을 회수하고 법률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습니**다.

15.4 배상 청구와 소송 기한

15.4.1 승객이 수하물을 찾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수하물이 온전한 상태로 승객에게 전해졌다는 일차적 증거로 간주됩니다. 분실된 수하물은 항공편이 도착하였을 때 춘추항공에 알려야 하며 비정상 운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본 기록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본 조건 15.4.2 조에 규정된 시간에 춘추항공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춘추항공은 수리하지 않으며 승객의 손실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5.4.2 승객이 위탁한 수하물이 손실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응당 손실을 발견한후 춘추항공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손실**되었**으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내에 제출해야 하고 위탁 수하물이 지체되면 가장 늦어 위탁 수하물을 승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21**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이의 제기는 서면 형식으로 상기 규정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춘추항공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4.3 **항공운송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유효기한은 2년으로서**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또는 항공기가 **당초**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날부터 또는 운송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 이 기한을 넘긴후 소송을 제출하면 손실 배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 16 조 정의

16.1 국내항공운송(또는 국내 운송이라 함):승객운송계약에 근거해 출발지, 약정된 중도연결지점, 목적지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있는 항공운송을 말합니다.

16.2 "협약"이라 함은 중국이 가입한「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1999 년 몬트리올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을 말합니다. 몬트리올협약에서 정한 배상책임 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약상 책임 한도 재검토 절차에 따라 공표한 최신 책임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중국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서가 이를 공표합니다.

16.3 "국제항공운송"(또는 국제 운송 이라 함)이란 협약의 별도 규정외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의 중단 여부를 불문하고 또는 중계 운송 과정에 운송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운송입니다.

16.4 지역 항공운송: 운송 계약에 의거해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 등 중국의 특정 지역과 항공운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항공운송은 특약이 없는 경우 국제 운송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합니다.

16.5 운송인: 민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승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 기업을 말합니다.

16.6 계약 운송인: 본 기업의 항공권과 항공권번호를 이용하여 승객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말합니다.

16.7 실제 운송인: 전부 혹은 부분 운송 및 기타 서비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운송인을 말합니다. 양자 간 협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코드 공유협의의경우, 실제 운송업자는 시장측 운송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16.8 춘추항공: 춘추항공 주식유한회사이다(이하 '춘추항공'이라 함)를 말합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중국 법률에 의거해 설립 및 운행하는 항공운송인입니다. 영문 명칭은 SPRING AIRLINES COMPANY LIMITED 이며 영문 약칭은 SPRING AIRLINES 이며 항공편 두 글자 코드는 9C 이며 세 글자 코드는 CQH 이며 IATA 결제 코드는 089 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ch.com 와 m.ch.com 입니다.

16.9 춘추항공 운송조건: 본 조건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춘추항공의 운송규정은 항공권을 구입한 날부터 유효한 기타 승객과 수하물 운송 관리규정에 적용되며 항공권 가격 및 적용 조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16.10 항공 판매 대리인: (이하 "판매 대리인"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춘추항공과 대리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춘추항공을 대리하여 계약에 명시된 공공 항공 승객 운송 서비스를 종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춘추항공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판매 대리인 또는 기타 기업 또는 개인은 춘추항공의 위탁 판매 대리인이 아닌데 만약 승객을 위해 가격 조회, 항공권 구입 혹은 지불을 대신하면 승객의 대리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16.11 지상 서비스 대리인: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춘추항공과 지상 대리 협약을 체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또는 해외 공항에서 춘추항공을 대리하여 협의에서 합의한 공항 지상 서비스 사업을 대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6.12 승객: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 후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 외의 모든 사람.

16.13 단체 승객: 항공편, 탑승 날짜, 항공편 및 객실 등급이 동일하고 단체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을 말합니다. 선실은 일반적으로 G, G1, G2 선실입니다.

16.14 아동 승객: 항공운송 개시일 기준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사람.

16.15 영아 승객: 항공운송 개시일 기준 출생 후 14 일이 이상, 만 2 세 미만의 사람.

16.16 자리 지정: 승객이 예약한 좌석, 객석등급 또는 수하물의 무게와 체적을 미리 남겨둔 것을 말합니다.

16.17 예약 클래스: 예약 클래스는 승객정보, 항공권 요금,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변경/취소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약 클래스는 A-Z 의 대문자(대문자 A 부터 Z 까지) 또는 대문자와 숫자(숫자가 0 부터 9 까지)의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M 클래스, P1 클래스

16.18 메인 클래스: 예약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16.19 서브 클래스: 인접한 메인 클래스 사이에 세분화된 클래스로, 서비스 내용 및 환불·변경 규정은 해당 메인 클래스와 일치합니다. 서브 클래스는 클래스 코드 뒤의 한 자리 대문자(한 자리 문자일 경우 단일 메인 클래스)로 표시되며, 문자 범위는 A-Z 입니다(예: MA 는 메인 클래스 M, 서브 클래스 A 를 의미하며 M 클래스 규칙과 동일).

16.20 항공편: 항공기가 규정된 항로, 날짜, 시각에 따라 진행하는 비행.

16.22.1 중국 주민 신분증: 중국 대륙 지역의 주민 신분증과 임시 주민 신분증(임시 탑승 증명 포함);

16.22.2 군인 신분증: 장교증, 문직 간부증, 무장경찰 장교증, 무장경찰 병사증, 의무병증, 사관증, 문직원증, 직원증;

16.22.3 여권류: 여권(여행증 포함), 홍콩 및 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대만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 중화인민공화국 홍콩·마카오 거주자의 내지 완래 통행증, 대륙 주민 대만 왕래

통행증(홍콩, 마카오, 대만 항공편 탑승 시에만 해당), 외국인 영주증(국제 항공편 탑승 시 본인 여권과 함께 사용해야 함), 외교부 발급 주중 외교관증, 선원증 등 항공국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한 탑승 신분증;

16.22.4 만 16 세 이하의 중국 대륙 주민의 유효한 신분 증명은 의학 출생증명, 호구부, 학생증 및 호구 지방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신분 증밍을 말합니다.

16.23 항공권: 운송 증서의 일종을 말합니다.

16.24 전자 항공권: 운송업자나 권한 부여 판매 대리인이 판매하고 운송 권리를 부여하는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체현된 유효한 운송증서로서 종이 항공권을 대체하는 전자 데이터 형태의 유효한 운송 증서입니다.

16.25 항공운송 전자 항공권 운임 영수증: 공공 항공운송 기업 및 항공운송 판매 대리점이 승객의 항공권 구매 시 승객에게 제공하는 지불 증빙 자료로, 승객의 비용 환급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항 보안 검색 및 탑승 증빙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6.26 연결여정 항공편이란 단일 운송 계약 중에 포함한 두 개(포함) 혹은 이상의 항공편을 말하며 왕복 항공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6.27 왕복항공권: 한곳에서 출발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후 원 비행노선에 따라 출발지로 돌아가는 항공권.

16.28 일반 운임: 운송인이 공시한 이코노미석 각 운임등급 중 일반 성인 승객에게 적용되는 최고운임을 말하며, 통상 전액운임이라 칭합니다. 다만, 운임 규제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규정에 따릅니다.

16.29 특수 운임: 일반 운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에 제한조건이 부가된 운임을 말합니다.

16.30 초과 판매: 운송인이 좌석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항공편에 실제 이용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좌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6.31 탑승 불능: 승객이 정해진 시간 내에 탑승 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명서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6.32 탑승 누락: 승객이 탑승 수속을 완료한 후 또는 경유지에서 환승 시에 해당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6.33 착오 탑승: 승객이 본인의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16.34 수하물: 여행 중에서 승객이 입거나 사용 또는 편하거나 편리를 목적으로 휴대한 필요한 량, 또는 적당한 량의 물품과 기타 개인재물을 말합니다.

16.35 위탁 수하물: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고 운송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16.36 비위탁 수하물: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 후 규정된 수하물 종류, 수량, 무게와 체적 범위내에서 승객이 자체로 휴대해야 하며 객실에 들어간후 관리해야 하는 수하물과 소지품을 말합니다.

16.37 수하물 운송증서: 항공권 중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부분으로서, 수하물 운송 증서의 일종을 말합니다.

16.38 수하물 태그: 위탁 수하물에 걸거나 부착하는 것으로, 번호 및 출발지와 도착지 내용이 기재된 식별 표찰을 말합니다.

16.39 출발 시각: 항공편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 문을 닫는 시간을 말합니다.

16.40 탑승 수속 마감 시각: 항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승객이 탑승 수속 및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최종 시간을 말합니다.

16.41 경유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외에 승객의 여행 노선상에서 경유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16.42 중도 분류: 미리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 후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모 지점의 여행로정을 일부러 중단하게끔 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16.43 환승: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간 여행 중 중간 지점에서 동일 운송업자의 다른 항공편이나 다른 운송업자의 항공편을 갈아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44 불가항력: 예측할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16.45 항공권 변경: 항공권의 일자 변경, 좌석 등급 변경 등을 말합니다.

16.46 자발적 환불: 승객 본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환불.

16.47 비자발적 환불: 항공편의 취소, 지연, 앞당김, 항공편 변경, 기내 클래스의 변경 혹은 운송인이 기존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승객이 환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6.48 승객용 항공권의 자발적 변경: 자발적 변경 즉 승객 본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변경을 말합니다.

16.49 항공권의 비자발적 변경: 비자발적 변경 즉 항공편의 취소, 지연, 앞당김, 항공편 변경, 기내 클래스의 변경 혹은 운송인이 기존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승객이 환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6.50 변경 수수료: 항공권의 적용 조건에 따라 승객이 기존에 예약한 항공편을 변경할 때 춘추항공에서 받는 비용으로 항공편 및 운송 날짜 등 변경 비용을 포함합니다.

16.51 운임 가격 차이: 승객이 자발적적으로 낮은 운임에서 높은 운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차액.

16.52 환불 수수료: 승객용 항공권의 적용 조건에 따라 승객이 기존에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할 때 춘추항공에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16.53 운송업자의 원인: 잘하지 못한 기체 유지, 부당한 항공편 배치, 상무 혹은 승무원 직무상의 과실 등 춘추항공에 귀책될 수 있는 원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류 충돌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항공기 임시 고장, 군대 활동이나 정부 명령으로 인한 항공편 임시 변경, 운송 금지, 항공 교통 관제, 공항, 유류 공급 또는 정보 시스템 등 제3자 원인으로 인한 보장 중단 등 예견불가 또는 극복불가 또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모두 운송업자의 원인이 아니다. 긴급 대피나 인도주의 등 원인으로 취한 승객을 해칠 수 있는 작위나 부작위도 운송업자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로 가리키는 것 외에 본 조건에서 운송업자의 원인은 바로 춘추항공의 원인입니다.

16.54 비 운송인 원인: 운송인과 무관한 원인으로 날씨, 사고, 항공 교통관리, 보안 검색,승객등 요인을 포함합니다.

16.55 코드 공유 항공편: 하나 혹은 여러 항공 회사의 협의하에 다른 항공회사의 항공편에 각자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6.56 "특별인출권"이란 국제통화기금에서 규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합니다.

16.57 운행 요금: 항공회사에서 공시한 항공권 가격, 비용 및 관련된 운송 조건을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6.58 일반석 , 비지니스 이코노미 , 스프링 플러스: 춘추항공 항공권의 좌석 등급을 말합니다.

16.59 춘추항공의 직속 판매 채널은 춘추항공 직속 매표소,고색서비스 911.1524 핫라인, 춘추항공의 공식 전자 채널(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클라이언트 APP, 애플릿)을 포함합니다.

16.60 항공편 지연: 항공편이 실제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계획된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15 분 이상 늦은 상황을 말합니다.

16.61 항공편 출항 지연: 항공편 실제 공항에 출발하는 시간이 계획된 공항에 출발하는 시간보다 15 분 이상 늦은 상황을 말합니다.

16.62 항공권 구매 완료: 법률 또는 당사자 쌍방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 계약이 성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16.63 항공권 사용 조건: 좌석 코드 또는 항공권 유형을 지정하는 데 적용되는 항공권 가격 규칙입니다.

제17조 효력 발생과 수정

17.1 본 운송조건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운송조건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되던「춘추항공 주식유한회사 여객 및 수하물 운송 총 조건」은 폐지되며, 본 운송조건으로 대체됩니다.

17.2 만약 본 조건의 규정이 법률과 법규의 강제성 규정과 충돌됩니다면 응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본조건의 기타 부분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중국 민간 항공국의 일부 규정이 추후 갱신 또는 조정되어 본 조건의 일부 조항과 불일치하는 경우, 중국 민간 항공국이 최근에 공시한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7.3 춘추항공은 중국민간 항공국에서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본 조건과 춘추항공운송규정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에서 승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승객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수정 내용은 수정 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만일 본 조건의 일부 조항이 춘추항공의 공식 채널에서 공시한 기타 운송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발표 시기가 늦은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7.4춘추항공의 직원, 권한 부여 판매 대리인, 권한 부여 지상 서비스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과 그들의 고용인은 본조건을 위반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본 조건을 확대 해석하여 승객에게 본 조건의 취지와 일치되지 않는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18 조 부록

18.1 무료 수하물 허용량

18.1.1 휴대 수하물 정책

항공권 등급	기내 반입 가능 최대 중량	기내 반입 가능 최대 크기
스프링 세이버 스프링 플렉시	무료 휴대 수하물 1 개 7kg	20*30*40cm(바퀴, 손잡이 및 캐리어 손잡이 부분 제외 기준)
스프링 플러스	무료 휴대 수하물 1 개 10kg	20*40*55cm(바퀴, 손잡이 및 캐리어 손잡이 부분 제외 기준)

18.1.2 위탁 수하물 정책

(1) 2026 년 3 월 28 일(포함) 이전에 판매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table>
<tr><th>항공권 등급</th><th>무료 위탁 가능 최대 중량</th><th>무료 위탁 가능 최대 크기</th></tr>
<tr><td>스프링 세이버</td><td colspan="2" rowspan="2">무료 위탁 불가</td></tr>
<tr><td>스프링 플렉시
(참고: 수하물 불포함 항공권 패키지)</td></tr>
<tr><td>스프링 플렉시
(참고: 수하물 포함 항공권 패키지)</td><td>20kg</td><td>40*60*100cm(바퀴 포함)</td></tr>
</table>

스프링 플러스	30kg	

(2) 2026 년 3 월 29 일(포함) 이후에 판매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항공권 등급	무료 위탁 가능 최대 중량	무료 위탁 가능 최대 크기
스프링 세이버	무료 위탁 불가	
스프링 플렉시 (참고: 수하물 불포함 항공권 패키지)		
스프링 플렉시 (참고: 수하물 포함 항공권 패키지)	20kg	40*60*100cm(바퀴 포함)
스프링 플러스	20kg	

18.2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 안내

위탁 수하물이 항공권에 포함된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은 운항 거리, 회원 등급 및 구매 채널과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8.2.1 요금 규정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은 운항 거리 및 수하물 중량 구간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중량 구간은 ≤5kg, >5kg 且 ≤10kg... 등으로, 해당 수하물 중량 등급(5kg, 10kg...)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8.2.2 현장 구매(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 초과 중량 수하물 요금

다음 가격은 5kg 당 요금 기준입니다.

노선 성격	운항 거리	5KG 현장 가격	탑승구 초과 규격 수하물 가격(개수 기준 부과 / 1 개당 10kg 이하)	통화
국내선(홍콩·마카오·대만 포함)	0-999km	60	300	위안(CNY)
	1000-1999km	75		
	2000-2999km	90		
	3000km 이상	105		
국제선	0-999km	120	500	위안(CNY)
	1000-1999km	135		
	2000-2999km	150		
	3000km 이상	165		

유의사항: 탑승구에서 초과규격 수하물 요금을 추가 납부한 승객의 경우,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 1 개의 최대 규격은 20×40×55cm 이며, 규격 측정 시 바퀴·손잡이 및 캐리어 손잡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18.2.3 온라인 사전 구매

승객은 춘추항공 공식 홈페이지, APP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초과 중량 수하물 허용량을 온라인으로 사전 구매하여 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 1 인당 온라인 구매는

1 회만 가능합니다. 허용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내에 공식 채널을 통해 기지불한 초과 중량 요금의 환불을 신청하고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를 방문하여 현장 기준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인율과 선택 가능한 허용량은 노선에 따라 상이하오니,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